

의안번호	2216253
의 퇴 인	김원이 의원
회 답 일	2026. 2. 12.
추 계 번호	25A7213
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조 (목적)	법 목적조항에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을 추가함	—
2	안 제2조 (정의)	산업계량의 정의를 추가함 — 산업계량: 제조·공정·시험·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의미함	—
3	안 제39조의2 신설 (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)	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. 교정기준의 조사·연구·개발 2. 교정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보급 3.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4.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 및 교육	재량규정
4	안 제39조의3 신설 (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,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,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39조의4 신설 (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)	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,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40조 (측정기기의 자율교정)	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의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산업통상부 고시로 변경함	재량규정
7	안 제57조의2 신설 (계량측정정책협의회)	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계량측정정책협의회를 둠 1.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·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.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조 (목적)	·미대상 - 법 목적에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정소요가 발생되지 않음
2	안 제2조 (정의)	·미대상 - 산업계량의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재정소요가 발생되지 않음
3	안 제39조의2 신설 (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39조의3 신설 (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39조의4 신설 (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6	안 제40조 (측정기기의 자율교정)	·미대상 - 자율교정 측정기기 종류의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산업통상부 고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정소요가 발생되지 않음
7	안 제57조의2 신설 (계량측정정책협의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조항 및 정의조항에 “산업계량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산업계량의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시책 수립의 근거와 관련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임
- 개정안의 내용 중 안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40조(측정기기의 자율

교정)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

- (안 제1조 및 제2조) 법률에 “산업계량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목적으로,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을 야기하지 않음
- (안 제40조) 자율교정 측정기기 종류를 규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의 형식을 대통령령에서 산업통상부 고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정소요 발생을 야기하지 않음

□ 이 외에 개정안은 산업계량 관련 사업과 산업계량 활성화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(안 제 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), 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규정하며(안 제39조의4 신설), 계량측정정책협의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(안 제57조의2 신설)하려는 것으로, 국가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

- (안 제39조의2 신설) 안 제39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정기준의 조사·연구·개발, 교정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현 시점에서는 사업 대상이 확정되지 않고 지원 범위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

－ 참고로, 2026년 산업통상부 예산에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정책·기술기준·표준·지침 개발에 9,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- (안 제39조의3 신설)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경우 시책에 포함될 표준물질의 개발,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,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시책 수립의 범위가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아 시책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
- (안 제39조의4 신설) 산업계량지원센터가 신규로 지정될 경우 센터로 지정된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업수행 비용 지원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센터 지정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
- (안 제57조의2 신설) 산업통상자원부에 계량측정협의회를 둘 경우 협의회 운영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협의회 구성원의

수, 사무국 설치 여부 등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에 관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